

(조합원)명의변경 절차 안내

① 매도·매수 입주권 매매계약 체결

직거래, 공인중개사, 법무사를 통해 입주권 매매 계약 체결
※ 발생서류 : 매매계약서

② 부동산 실거래 신고 [연수구청 토지정보과 :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담당 (☎ 032-749-7594)]

매매 : 관할 지자체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작성 후 신고필증 발급
 증여 :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검인
※ 발생서류 : 토지/건축물/입주권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각 1부 (또는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)

③ 이주비 대출 상환 **※ 승계 불가**

지점 구분	서류 문의	중도금 대출 승계 장소
인천 만수중앙신협 본점	032-471-0831~2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6-1

※ 발생서류 : 이주비 대출 상환 영수증

④ 중도금 대출 승계 [계약자별 대출은행이 상이하오니 조합사무실에 확인 바랍니다. (☎ 032-882-0120)]

대출은행 확인 >> 중도금 대출 승계 관련 서류 준비 >> 중도금 대출 은행 방문하여 대출 승계 또는 상환 처리
※ 발생서류 :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또는 상환 영수증

지점 구분	서류 문의	중도금 대출 승계 장소
인천 수협 가좌지점	032-878-3351~3	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8
하동군 수협	055-880-5719	
여수 수협 부천중동지점	032-612-1126~7	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262

⑤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서 작성 및 입주권 명의변경 신청

매도인 매수인 시행사(조합사무실)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명의변경란 작성
[시행사(조합사무실)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6-8, 202호]

매도인 구비서류	매수인 구비서류(공동명의로시 각1부)
① 공급계약서 3종 원본(분양, 발코니, 옵션)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③ 등본 1통 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필증) 1부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※ 위임 불가	① 일반 인감증명서 1통 ② 등본 1통(공동명의로시 1통 추가)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신분증 ⑤ 인감도장 ⑥ 조합원대표선임동의서 작성(공동명의로시 작성/조합사무실 비치) ※ 위임 가능(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)

※ 공통서류 : 매매계약서, 토지/건축물/입주권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각 1부, 이주비 대출 상환 영수증,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(또는 상환영수증)

⑥ 세금 신고

구분	신고인	신고기한
양도소득세	매도인	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•납부
증여세	수증인	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•납부

※ 유의사항

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(원본)는 최종계약자가 등기 시 각 거래건별 모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